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1. 19 선고 2015가합2783 판결 [구상금 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국민마스터 주식회사

피 고 넥스트디앤드에스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5. 11. 3.

판결 선고 2015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75,390,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7. 1.부터 2015. 5. 4.까지는연 5%, 2015. 5. 5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75,390,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(2007. 11. 23. '국민지주 주식회사'에서 상호변경됨)는 2002. 12. 27. 피고의 외환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,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(계좌번호181-16-04405-2)에 예치된 예금 5억 원에 관하여, 담보한도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원고가 외환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, 외환은행은 2004. 6. 30.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 501,863,013원(원금 5억 원 + 이자 1,863,013원)을 자동채권, 피고가 외환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 111,773,827원 및 12,410,458원과 원고가 외환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 502,288,020원(원금 5억 원 + 이자 2,288,020원)에 대한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고, 원고는 같은 날 상계 후 남은 금액 124,609,292원(502,288,020원 + 111,773,827원 + 12,410,458원 - 501,863,013원)을 지급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가 외환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375,390,708원(상계처리된 예금 원금 5억 원 - 124,609,292원)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,390,7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권 취득 다음날인 2004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. 5. 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%, 2015. 5. 5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이하 '특례규정'이라한다) 부칙(2015. 9. 25. 대통령령 제26553호) 제2조 제2항, 구 특례규정(2015. 9.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20%,

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2003. 4. 23.경 피고의 지주회사인 넥스트미디어홀딩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현미, 판사 송명주, 판사 고대석